

	검색	사이트맵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29:29 연장하기
--	----	------	------	-------	------------

- [사전정보](#)
[원문정보](#)
[공개청구](#)
[공개현황](#)
[공개제도](#)
[도우미](#)
[국민관심사항](#)

홈 > 공개청구 > 청구신청조회

청구신청조회

공개청구

정보목록
청구신청
청구신청조회
이의신청
이의신청조회

접수대기 접수 처리중 공개완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5294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47번길 12 조종래			청구서 보기
접수번호	6669525	접수일자	2020.04.15	
처리기관	고성군	통지일자	2020.04.28	
청구내용	<p>새시장 주차장 입구앞에 질의1)불법과일노점상의 이전 보상비 26,873,000원의 지급근거로 약칭:토지보상법 몇조를 적용 했는지요. 질의2)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인지요 질의3)회계처리상 어느실과에서 처리하며 처리 관 항 목은 무엇입니까.</p> <p>청구1) 경남일보 2020.04.14일자 근거하여 백두현 군수께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라고 하 ? 는데 하여 그 대법원 판례를 공개 바랍니다.</p>			
공개내용	<p>질의1)불법과일노점상의 이전 보상비 26,873,000원의 지급근거 질의2)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 유무 질의3)회계처리상 어느실과에서 처리하며 처리 관 항 목</p> <p>청구1) 대법원 판례 공개</p>			
비공개내용				
공개방법	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시	2020-05-13 공개일시 5-13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공개일시 지정사유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결정통지 확인일자	2020-04-29			

공개자료

공개자료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hwp
------	---------------------------------

※ 공개자료 확장자가 csd인 경우는, csd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뷰어설치](#)

수수료 정보

수수료 정보	수수료(A)	운송료(B)	감면액(C)	합계(A+B-C)
수수료 정보	300원	0원	0원	300원
수수료 산정명세				

은행명		
계좌번호		
납부기한	2020-05-06	수수료 납부 기한 2020-05-06
납부형태	휴대폰	
납부일자	2020-04-29	" 납부일자 2020-04-29
납부여부	납부완료	= 정정통지 작성일자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일자리경제과	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0478
기안자	김중형	직위/직급	지방행정주사보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김종춘	직위/직급	지방시설사무관
주소	5293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고성군청 행정과		
전화번호	055-670-2303	팩스번호	02-670-2309
전자우편	myhyeong@korea.kr		

유의사항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점수는 수정 불가하고 의견만 수정 가능합니다.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목록](#) [출력](#)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공개결정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답변내용

질문 1) 불법 과일 노점상의 이전 보상비 26, 873,000원의 지급근거로 약칭 토지보상법 몇조를 적용하였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질문 2)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인지?

⇒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입니다.

질문 3) 회계처리상 어느 실과에서 처리하며 처리 관 항 목은 무엇인지?

⇒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며,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질문 4) 지급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공개 바람?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판시사항】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영업을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유】

1.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0년경 이 사건 장터가 개설된 이래 소외인으로부터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그 내부에 냉장고, 주방용품, 가스통, 탁자, 의자 등을 구비한 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란장날인 매달 4일, 9일, 14

일, 19일, 24일, 29일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생고기,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정기적으로 각 해당 점포를 운영하여 왔고, 영업종료 후 가설물과 냉장고 등 주방용품을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계속 고정하여 사용·관리하여 왔던 점, 원고들은 장날의 전날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장날 당일에는 종일 장사를 하며 그 다음날에는 뒷정리를 하는 등 5일 중 3일 정도는 이 사건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영업을 5일에 한 번씩 하였고 그 장소도 철거가 용이한 가설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의 고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제5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액수가 원심판결 별지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이 5일 중 1일만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보상금 액수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과 같은 무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실제 매출액·영업이익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3개월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